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1년 5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산업기술시장과 강혁기 과장, 권기성 사무관(☎ 02-2110-5397)		

녹색인증 대상 확대로 녹색산업 성장 지원 가속화

- 『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』 개정 고시 -

□ **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**는 **관계부처**와 **합동**으로,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·기준·방법 등을 규정한 **『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』**('10.4.14 제정)을 5.17일자로 **개정 고시**함

○ **녹색인증제**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의거, '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**지원대상 및 범위**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**투자활성화** 목적으로 도입되었음

* '11.5.16 현재 녹색기술 302건, 녹색사업 9건, 녹색전문기업 30개 인증(확인)

□ **금번 개정고시**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**녹색기술 인증대상**에 **태양열, 지열, 핵융합, 콘텐츠,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**하였으며,

* (기존) 61개 중점분야 1,263개 핵심기술 → (개정) 85개 중점분야 1,745개 핵심기술

○ **도입기 기술 등**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**기술수준을 완화**해서 적용함

* 녹색기술 인증대상 및 기술수준 갱신을 위해 '10.12월부터 5개월여간 민관합동 작업반 운영(분야별 전문가 360여명 참여)

○ 또한, **녹색사업 인증대상**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外에 **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**하는 등 **산업계 니즈를 반영**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**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**하기로 함

□ **녹색인증 평가와 관련**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**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**함으로써 **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으며,**

○ **이와 별도로** 향후 **금융권에 여신을 신청**한 **녹색인증 대상기업**에 대해서는 **녹색인증 신청**부터 **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**를 연동한 **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**(첨부3)하고, 지난 '10년 8월 발표한 녹색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**2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**하는 등

○ **汎정부 차원**에서 **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** 및 **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**을 통해 **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**할 계획임

첨부 1. 『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고시』 주요내용

2.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 (2011.5.16 기준)

3. 금융권 녹색인증 대상 여신전용시스템

4. "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"(2010.8.11 위기관리회의) 추진현황

참고 1 『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고시』 주요내용

1 녹색기술

인증대상

◈ (현행) 10大 61개 중점분야 1,263개 핵심(요소)기술
→ (개정안) 10大 85개 중점분야 1,745개 핵심(요소)기술

□ 태양열, 핵융합, 콘텐츠, 바이오의약 등 **24개 중점분야 신규추가**

○ 콘텐츠, 바이오의약 등 **低탄소화에 기여**하는 **지식기반산업기술** 및 지식기반산업기술外에도 태양열, 지열, 이차전지, 해양생명공학 등 **사회적 니즈가 높은 분야**까지 인증 대상 확대

기술수준

◈ **현행 최고기술대비 70% 수준 유지**하되, **도입기 기술 등** 과소 인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**동종업계 상위 30% 수준*** 적용
* 최고기술대비로는 약 50% 수준

□ 국내 全분야 기술수준 평균('06년 76.8%, KISTEP) 이상으로 **기술력을 기반으로 신규시장 창출역량**을 보유한 수준을 **기본**으로 하되,

○ **도입기 기술 등**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큰 경우에는 **기술수준을 완화**해서 적용

* (연료감응 태양전지) 모듈효율 7% 이상 → 6% 이상
* (CO_2이용 유용한 화학물질 합성) CO2 유효저감율 60% 이상 → 10% 이상

□ 총 1,054건의 핵심기술(신규 691건 제외) 중 **131건**(12.4%) **완화, 565건**(53.6%) **구체화*** **및 358건**(34.0%) **현행유지**

* (에코시멘트제조기술) 다이옥신, PCB free → 다이옥신 0.1ng-TEQ/N㎥이내

2 녹색사업

인증대상

◈ (현행) 9大 95개 사업 → (개정안) 9大 105개 사업

□ 지열에너지, 고효율화공정설비, 콘텐츠보급 등 **10개 사업 신규추가**

신청요건

◈ (현행) 녹색프로젝트 → (개정안) 녹색설비투자까지 확대

□ **(現 요건)** 해당사업의 **소유권 또는 사업권**을 신청자가 **보유***하고 해당사업이 **기간이 특정된 프로젝트**인 경우에 인증신청 가능

* 정부·지자체 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(또는 사업권)이 없는 原수급자(납품기업)에 대해서도 녹색사업 신청자격을 인정

□ **(개정요건) 프로젝트 外**에도 녹색사업의 범주로 인정 가능한 경우에는 **포괄적으로 신청자격 인정**

○ **생산시설 신·증설, 제품·설비 생산라인 구축,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** 등

* 단, 기업의 제품생산·판매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및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히 신기술 등 적용을 통한 공정개선은 사업인증 대상에서 제외

3 인증평가 기준

녹색기술 평가기준

◈ (현행) 기술성·시장성·녹색성 등 **3大 평가항목, 7개 세부지표**
→ (개정안) **기술(우수)성, 녹색성 2大 평가항목, 5개 세부지표**

□ **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**는 **최소화**하고 특히, 금융권 **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**를 통해 녹색인증 활성화 유도

* 최소한의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은 기술(우수)성 항목에 통합

	As-Is		To-Be
평가항목	기술성(40점), 시장성(30점), 녹색성(30점)	≫	기술우수성(60점), 녹색성(40점)
평가지표	기술성(4개), 시장성(2개), 녹색성(1개)		기술우수성(4개), 녹색성(1개)

녹색사업 평가기준

◈ **3대 평가항목**(기술활용성·환경개선효과·사업타당성) **中 사업타당성 항목을 정책적합성 항목으로 변경**

□ 기존 사업타당성 항목을 **세부지표와의 정합성 차원**에서 **명칭변경**

* 기존 사업타당성 평가항목의 '엔지니어링/기술적오류에 대한 대책' 세부지표는 기술활용성 평가항목으로 통합

	As-Is		To-Be
평가항목	기술활용성(30점), 환경개선효과(50점), 사업타당성(20점)	≫	기술활용성(30점), 환경개선효과(50점), 정책적합성(20점)
평가지표	기술활용성(2개), 환경개선효과(1개), 사업타당성(3개)		기술활용성(2개), 환경개선효과(1개), 정책적합성(2개)

참고 2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 (2011.5.16 기준)

□ (신청 및 인증결과) '11.5.16 현재 **874건**(기술 750, 사업 68, 전문기업 56) 신청, 이 중 **기술 302건, 사업 9건 인증** 및 **전문기업 30개 확인**

(단위 : 건)

구분	인증신청	평가진행	인증심의위원회 결과	
			적합	부적합
녹색기술 인증	750 (556개)	301 (256개)	302 (250개)	147 (135개)
녹색사업 인증	68 (60개)	44 (41개)	9 (6개)	15 (15개)
녹색전문기업 확인	56 (56개)	24 (24개)	30 (30개)	2 (2개)
계	874 (593개)	369 (303개)	341 (254개)	164 (146개)

□ (신청기관 유형) **대기업 38개, 중소기업 531개, 개인사업자 등 24개**

(단위 : 건)

구분	대기업	중소기업			개인사업자 대학등
		벤처·이노비즈	기타	소계	
녹색기술 인증신청	118 (37개)	445 (364개)	155 (133개)	600 (497개)	32 (22개)
녹색사업 인증신청	5 (2개)	37 (34개)	24 (22개)	61 (56개)	2 (2개)
녹색전문기업 신청	4 (4개)	44 (44개)	7 (7개)	51 (51개)	1 (1개)
계	127 (38개)	526 (382개)	186 (149개)	712 (531개)	35 (24개)

□ (홈페이지 회원) **대기업 53개, 중소기업 1,365개, 개인사업자 등 78개**

(단위 : 개)

구 분			등 록
일반회원(A)			1,340
기관회원*	대기업		53
	중소기업	벤처·이노비즈	926
		기타	439
	기타		78
	소계(B)		1,496
계(A)+(B)			2,836

(*) 기관회원 : 녹색인증 신청을 위해 반드시 사전등록 필요

참고 3 금융권, 녹색인증 대상 여신전용시스템

□ (개요) 금융회사의 **여신심사시** 녹색인증(확인) **신청과 연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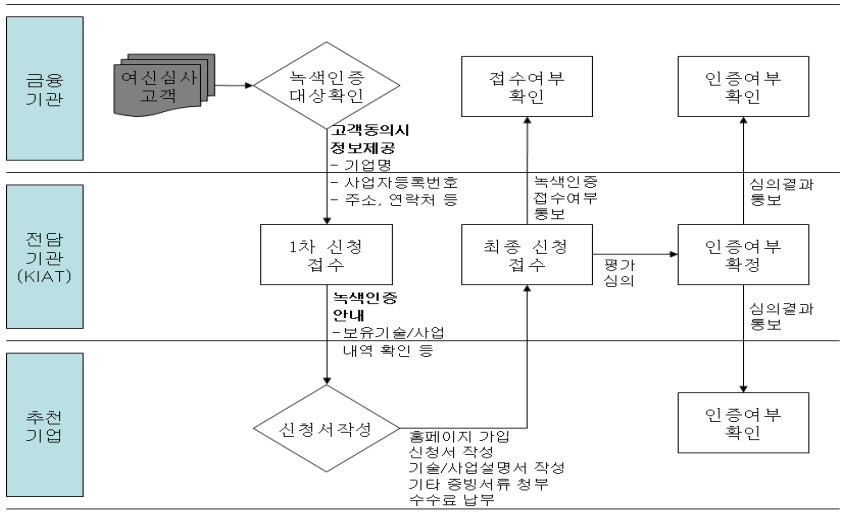
○ 금융회사가 **여신심사 과정**에서 녹색인증(확인) **신청대상 기업**에게 녹색인증(확인) **신청**을 **권유**

○ 기업동의시 금융회사는 **전용시스템***을 **통해 전담기관**(산업기술진흥원)**으로 관련내용**(기업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 **송부**

* Web 기반 연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(현행 녹색인증홈페이지 형태)

* 금융회사는 전용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인증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(여신심사 결과를 전담기관에 피드백, 금융회사 본사 또는 지역센터별로 전용시스템 전담인력 운용)

< 금융권 전용시스템 프로세스 >



□ (기대효과) 기업이 **실제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**를 통해 인증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녹색인증의 **금융연계를 보다 강화**

□ (향후계획) **'11.6월, 전용시스템 개발** ⇒ **'11.하반기**, 금융회사 **보급 및 운용**(전담인력 지정 등)

참고 4 녹색인증기업 지원방안(10.8월) 추진현황

추진 과제		주관부처	추진현황
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(5개)	■ 산업별 보급융자 녹색인증기업 참여 우대	각부처	부분완료
	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적용	중기청	'10.6 완료
	■ 기술보증 중점지원 대상에 녹색인증 포함	기보	'10.6 완료
	■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등 수출금융지원 우대	수은	'10.10 완료
	■ 녹색전문기업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	무보	'10.8 완료
판로·마케팅 지원 (9개)	■ 정부발주공사 녹색인증기업 우대	기재부	'11.5 완료
	■ 공공구매/국방조달심사 녹색인증기업 우대	조달청 국방부	'10.9 완료 '11.1 완료
	■ TV·라디오 광고료 부분 면제(70%)	KOBACO	'10.9 완료
	■ 해외전시회 참가시 녹색인증기업 우선권	KOTRA外	'11.2 완료
	■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녹색인증기업 우대	중기청	'11.5 예정
	■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녹색인증기업 우대	중기청外	부분완료
	■ 녹색인증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	중기청	'11.12 예정
	■ 녹색인증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	중기청	'11.5 예정
	■ Green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	KOTRA	'11.9 예정
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(5개)	■ 녹색전문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우대	교과부 병무청	'11.2 완료 '11.6 예정
	■ 녹색인증기업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	중기청	'11.1 완료
	■ 출연연 석·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	지경부	'11.3 완료
	■ 중소기업 녹색인증 비용부담 경감	기재부 지경부	'11.2 완료
	■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	교과부外	'11.6 예정
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(6개)	■ 국가R&D 참여 우대 및 인증수수료 지원	각부처	부분완료
	■ 특허우선심사(신청후 1개월까지 단축가능)	특허청	'10.4 완료
	■ 녹색인증기업 국제출원비용지원시 가점(5점)	특허청	'11.3 완료
	■ 기술이전·투자유치 설명회 개최	지경부	'11.6 예정
	■ 녹색인증기업 글로벌사업화컨설팅 지원	지경부	'11.1 완료
	■ 녹색인증 국제컨퍼런스 개최(GGGI 연계)	지경부	'11.6 예정

※ 과제별 상세한 세부지원내용 및 방법은 "녹색인증 홈페이지(www.greencertif.or.kr)" 참조